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찬성자:27명)

나. 의안번호 : 제 2543 호

다. 발의일자 : 2025. 03. 31

라. 회부일자 : 2025. 04. 02

2. 제안이유

-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자치구와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마.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참조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25. 4. 5.~4. 9.)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화재 등의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서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에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안 제1조 (목적)	·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정의)	·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용어 정의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안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에게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 1.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 (점검)	· 시장에게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	· 시장에게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에게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운영 현황

-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1)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9조2)에 근거하여 도로에서 긴급자동차로서의 우선 통행권을 갖는 법적 지위를 가지며,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음.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구급차 등을 포함한 총 19종류의 긴급차량을 861대 보유하고 있으며([표 2 참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3)의 소방차 등 긴급차량 배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소방기관별로 긴급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생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하 생략)

2)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미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표 2] 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차량 보유 현황(2025년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대)

긴급차량(19종 861대)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무인화재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대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이동정비차	발전배수차	회복지원차	유조차	장비운반차	이륜차
119	103	1	27	7	27	24	11	53	57	188	27	25	1	4	1	1	58	127

■ 서울특별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현황

-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관내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2017년에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일제조사 계획(국민안전처 방호조사와 제1232(2017.2.16.)호)」에 따른 ‘소방차 진입불가지역’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세부 기준((붙임 1 참조))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로 정하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을 살펴보면, 2020년 368개소, 2021년 350개소, 2022년 331개소,

2023년 328개소, 2024년 324개소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표 3 참조])이긴 하나 전국적으로는 가장 높은 실정([표 4 참조])임.

[표 3]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개소)	368	350	331	328	324
소방차 출동불가지역(개소)	111	103	102	99	99
소방차 출동곤란지역(개소)	257	247	229	229	225

[표 4] 전국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보유 현황(2025년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324	109	65	74	4	36	23	8	4	15	5	2	2	4	9	11	7	8	16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99	0	1	1	3	0	3	6	1	4	2	1	1	1	0	3	2	0	5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225	109	64	73	1	36	20	2	3	11	3	1	1	3	9	8	5	8	11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⁵⁾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노면표시, 조명블럭 보수,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추진⁶⁾하고,

4)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431(2025.02.25.)호)」

5)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

□ 추진근거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화재진압 종합대책(재난대응과 제3780(2015.2.17.)호)」
○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재난대응과 제714(2016.1.12.)호)」

□ 추진배경

○ 서울 곳곳에 산재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해소를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 화재진압시설 보강으로 지역사회 화재안전 강화

□ 추진기간 : 매년 1. 1. ~ 12. 31. / 연중

□ 추진목표 : 전년 대비 10% 이상 해소, 공공화재 진압시설 보강 등

(중점 추진사항)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해소 + 안전시설 확충 + 훈련 강화

6)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현황(2024년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조명블럭 설치('16.~'19.) 및 유지·관리('20.~'24.)

- 아울러 소방, 경찰, 자치구, 도로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선협의회도 25개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표 5 참조])하고 있으나, 소방청이 제시한 ‘연간 10% 해소(2023년부터 추진)’ 목표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⁷⁾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임.

[표 5]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구 성) 25개 소방서에 1개씩 구성(소방·경찰·지자체·도로관리기관 등 ※ 과장급 이상 구성)
■ (운 영) 연 1회 이상 운영
▶ 2024년도 25개 협의회 운영 실적 : 167회(참여인원 : 소방(499), 경찰(55), 자치구(247), 기타(250))
■ (2024년도 협의회 주요 내용)
▶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도로 : 양방향 → 일방통행, 소방출동로 노면표시, 주차금지표시봉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CCTV 설치 등
▶ 주차구역 재정비(이면도로 등 주차선 삭선·이동) : 도로폭 4m이상 확보
▶ 소방차 주행 여건 개선 : 장애물, 급경사·급커브, 회전교차로, 도로포장 등
▶ 지자체 도로관련 예산편성 시, 소방통행로 관련 예산 우선 확보 요청
▶ 지속적인 행정 협업을 위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관리 조례 제정' 추진(필요시) □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21.9.27.제정)
▶ 도로·주차장 설계단계부터 관할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로 출동로 관리

- 노면표시 790개소(소방차통행로 593 정차금지지대 197), 조명블럭 312개소
- '22~'24년은 기존 설치분 보수('22년 60개소 → '23년 43개소 → '24년 39개소)
※ 노면표시 및 조명블럭 보수 예산('25년): 22,950천원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소화기함 설치 현황

불가·곤란지역(곳)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함		비소화 또는 소화기함 미설치지역(곳)
합계	불가	곤란	설치지역(곳)	설치수량(개)	설치지역(곳)	설치수량(개)	
324	99	225	323	733	304	3,505	0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삭선: 1,279개소

- '20년이전1,100개소 → '21년32개소 → '22년47개소 → '23년55개소 → '24년45개소 삭선 完

□ IoT 소화전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13개소(창신동, 부암동)

- 소화전 원격관리 및 불법 주정차 사전차단('24년 12,747건)으로 취약지역 소방활동 환경개선

□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적(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 2022년 13,501회, 2023년 9,396회, 2024년 8,879회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 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7)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전년 대비 10% 해소 목표 결과(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시 출동불가·곤란지역(개소)	368	350	331	328	324
전년 대비 증감(개소)	-	△18	△19	△3	△4
달 성 률(%)	-	4.9%	5.4%	0.9%	1.7%
소방청 해소 목표(%)	-	-	10%	10%	10%

※ 소방청은 2023년부터 10% 해소 목표 시도 소방본부마다 전년도 달성률에 대한 표기하고 있음.

■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

-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출동 환경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긴급차량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개선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동환경 개선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324개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82% 이상(267개소)이 주거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는 현재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출동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료됨.
- 따라서, 본 제정안은 긴급차량 진입불가·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출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 기존의 실무 중심 대응에 법적 제도를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협의체의 기능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을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긴급차량”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중인 소방차와 구급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함.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을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으로, 그리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긴

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정립한 ‘소방차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 선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 명시한 것으로,

- 해당 기준이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실무에서 통용되는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실무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사료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에게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⁸⁾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음.

다.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는 시장에게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

8)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 ‘관리에 관한 사항’,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먼저, 안 제4조제1호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는 기초자료 확보 및 진입 장애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되며,
-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매년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조사를 위해 지역 내 거주 인원, 위치도, 출동로, 항공지도, 장애요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카드(〔붙임 2 참조〕)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호의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에 대하여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조성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 현재 소방이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조명블럭 설치,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소화기함 설치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정책사업의 연속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제3호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황 조사 및 출동환경 조성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리카드 갱신,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제4호는,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불법주정차 금지, 소방차 길 터주기 등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적정한 관리에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행사항 점검(안 제5조)

- 안 제5조(점검)는 시장에게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이는 안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이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 후속조치를 유도하려는 장치로 이해되며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시장에게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이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 구조 개선, 불법 주정차 관리, 주민 민원 조정 등과 같은 문제는 다양한 행정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의미있는 조치라 하겠음.
- 또한, 현재 25개 소방서마다 소방,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구성·운영 중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협의회’의 경우 조례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해당 협의회에서 도출되는 정책이나 협의 결과의 정당성과 실행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협의체가 단순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방식과 운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시 관할 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교육·홍보, 협력체계 운영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특히 그간 소방재난본부에서 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하던 출동환경 개선 활동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연속성과 행정적 책임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도로 구조나 물리적 장애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출동 지연 문제는 소방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실질적 개선 효과를 담보하는 의미있는 장치로 평가됨.

[붙임 1]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선정기준(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일제조사 계획, 국민안전처, 2017)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도로 폭 4m 미만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인 장소
- 도로 폭 4m 이상 6m 미만의 구간에 주차구획이 양면으로 구획되어 소방차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으로 소방차 통행을 위해 식선 및 이동조차가 필요한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차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구조적 소방차 출동 불가지역

- 출동로상 높이 4m, 폭 2.5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부서를 할 경우 밀릴 위험이 있어 차량 부서가 불가능한 장소

※ 소방차량 불가 지역이 있더라도 우회로(우회 출동로의 거리가 1km 미만) 등을 통해 재난(화재) 대응이 가능 하거나, 고가굴절 등 대형차 외의 소방차량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경우 제외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인 진입은 불가하나, 우회통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경우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5m 이상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진입 가능 폭 3m 이상이 확보되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차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구조적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출동로상 구조적으로 중앙분리대, 좁은 회차로, 과도한 과속방지턱, 무분별한 주차구획선 등의 설치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장애를 주는 장소
- 출동로상 높이 4.5m, 폭 3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밀릴 위험이 있거나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소

□ 고층건축물 소방차 진입 및 활동곤란 지역

- 11층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서 도로 폭 제한, 기타 장애물 등으로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대형공사장 등 출동 장애지역

- 3개월 이상 장기 공사 구간으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평상시 우회도로 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장소
 - * 3개월 미만 공사라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각 소방서별 자체관리 필요

[붙임 2]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관리카드(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생물-기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임의작성]						
[이연도로 등] 소방차 진입 불가 · 곤란 지역 관리카드						
관 할 소 방 차 [안전 센터]		관악소방서(봉천119안전센터) ※ 선착대와 거리(1.8Km, 7분 소요)				
진입불가(곤란) 구 간 명		관악구 청림길 5 ~ 관악로 294				
진 입 여 부		진입곤란				
영 역 별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기타주거지역		
구 간 현 양 (단 위 : m)		최소너비	평균너비	구간길이		
		3	5	240		
진입불가(곤란) 사 유		도로협소				
진입불가(곤란) 세 부 사 유		시장 내 장애물(이동식 파란 등)				
진입불가(곤란) 애 소 가 능 여 부		가능여부		불가능 사유		
		가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파란 이동조치 가능		
시 설 보 강	소 방 용 수 설 시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미설치사유	
		13	0	0	-	
	비상소화장치	설치수량	미설치사유			
		2	-			
	보이는소화기함	설치수량	미설치사유			
		20	-			
기 타		·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지자체 설치)				
지 역 내 주 인 원		가구수(호)		거주인원(명)		
		81		172		
기타 참고사항		* 아산시 거주민의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주간보다 더욱 곤란하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최대한 이동 후 소방소로 전개 후 화재진압 필요				

[illegible]